



## 美 금융당국, 스타트업 보험브로커에 최대 과징금 부과

박정희 선임연구원

미국 건강보험 관련 IT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의 보험판매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주(州)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받게 되었음. 보험감독 당국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소비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중소기업들이 직원복지를 위해 브로커를 통한 보험가입보다는 인슈어테크(InsurTech) 스타트업 기업<sup>1)</sup>을 통한 보험가입을 선호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인 제네피츠(Zenefits)<sup>2)</sup>는 개인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보수, 복지, 채용과 같은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보험상품을 권하는 사실상 ‘보험 브로커’ 역할을 해왔음.
    - 제네피츠는 2013년 2월 설립 당시 기업가치가 5억 달러(약 5,406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약 45억 달러(약 5조 2,515억 원)로 상승하여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함.
    - 인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건강보험회사와 연결해주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런데 성장세가 빠른 스타트업 기업이 보험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주 보험청이 관련 기업을 조사함.<sup>3)</sup>

1)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혁신적 기술과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함.  
 2) 온라인 인적자원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로 2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웍스탑’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회사란 평가(CB Insight)를 받고 있음.

-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중소기업 보험계약 8,118건 중 1,994건이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들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남.<sup>4)</sup>
  - 또한 보험판매 직원들은 보험판매에 있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를 정식으로 수료하지 않고 프로그램<sup>5)</sup>을 이용하여 주정부 법을 우회하였음.
  - 백엔드(Back-End)<sup>6)</sup>가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상품이 제대로 등록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제네피츠 웹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등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험회사들과 데이터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 메일을 통해 등록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 이에 캘리포니아주 보험청은 스타트업 보험브로커인 제네피츠에 판매자격 등의 위반으로 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임.
- 보험 자격이 없는 직원이 고객의 보험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과징금 300만 달러, 보험 대리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 400만 달러를 부과한 것임.
  - 또한 캘리포니아주 보험청의 조사비용 16만 달러도 조사대상 기업에 부과하기로 결정함.
- 한편, 워싱턴주 보험위원회도 보험상품 구매고객에게 인사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네피츠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함.<sup>7)</sup>
- 보험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네피츠와 같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힘.
- 국내에서도 이러한 판매과정의 변화를 주시하고 향후 감독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ri](#)

3)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캘리포니아주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함.

4) 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 1668(b), (j), (l), (n), (o)와 1738 위반임.

5) 판매자격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화면의 특정부위를 일정 시간마다 클릭하게끔 프로그래밍해두고 그 위치를 페이지 넘김 버튼 위치로 해두는 매크로 기법으로, 이는 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 1749 위반임.

6) 시스템 구축, 내부 로직,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처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함.

7) 제네피츠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연간 2.9만 달러에서 4.5만 달러인데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인 유인(RCW 48.30.140; RCW 48.30.150)에 해당한다고 판단함.